(재)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-107호

2025년 포항시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탄소저감 지원 기업 추가 모집 공고

포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 강화 및 탄소중립 시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‘2025년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’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6월 10일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Ⅰ 지원개요

① 지원목적

○ 탄소중립 시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

○ 내수, 수출 등 탄소 감축 노력 요구 및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

② 지원대상

○ 포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기준)

※ 중소기업 : 중소기업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※ **지원대상지 주소가 포항시 내에 있어야함**

분류	지원 조건
탄소 인벤토리 구축	• 직전 3개년 평균('22~24년)에너지사용량이 **300toe ~ 2,000toe 미만인 사업장**
탄소 저감 지원	• 장비 대한 탄소 인벤토리 구축 결과에 따라 **자격 요건** 충족하며,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 ※ 자격 요건 : 장비 개선에 따른 **에너지 절감률 3% 이상** 등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는 기업

③ 모집기간

○ 2025.06.10.(화) ~ 2025.06.24.(화) 18시까지

④ 지원기간

○ 협약 후 ~ 2025.11.30. 까지

⑤ 총 지원규모

○ 금116,702천원

Ⅱ 지원내용

① 지원분야 : 사업장 탄소인벤토리 구축, 노후·저효율 장비개선

② 세부 지원내용

구분		세부내용	최대 지원금액
탄소 인벤토리 구축 지원	Ⓐ탄소 인벤토리 구축	-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, 배출량 산정 등 탄소 인벤토리 구축 및 컨설팅 - 기업의 지속가능한 탄소관리 체계 수립	4,000천원
탄소저감 지원	Ⓑ노후·저효율 장비 개선	- 탄소 인벤토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·저효율 장비를 개선 지원	39,000천원

③ 수행 기관

○ Ⓐ탄소 인벤토리 구축: 지원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이후, 탄소 인벤토리 구축 기관·기업 pool에서 선택하여 수행

○ Ⓑ노후·저효율 장비 개선: 포항테크노파크 에너지사업본부

④ 지원방침

○ 지원예산 범위 내, 평가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차등지원

○ 사업비 자부담 (총 사업비의 10% 이상 매칭 필수, 자부담은 전액 현금)

구분(예시, 단위: 원)		
총 사업비	지원금	기업부담금(전액 현금)
11,120,000	10,000,000	1,120,000

※ 해당 사업비의 모든 예산 항목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

⑤ 지원방식

○ 직접지원 : 수행기관 → 지원기업 직접 지급

※ 협약 체결 → 사업비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→ 1차 / 2차 지원금 지급

Ⅲ 신청 및 접수

① 신청기간: 2025.06.10.(화) ~ 2025.065.24.(화) 18시까지

② 신청방법

○ (재)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(https://www.ptp.or.kr/) 사업공고에서 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(**Ⓐ인벤토리 구축, Ⓑ노후·저효율 장비 개선**)

※ 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(hwp)으로 업로드 필수

○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·반환 불가

○ 전산등록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

③ 제출서류

○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

구분	제출 서류	원본/사본	비 고
신청서	① 지원 신청서 각 1부 - [서식1-1]Ⓐ탄소 인벤토리 구축지원 - [서식1-2]Ⓑ탄소저감 지원	원본	붙임양식 참조 (필수)
기타 증빙 자료 기타 증빙 자료	② 22~24년 사업장 에너지사용량 증빙자료 1부	사본	원본대조필(필수)
	③ 사업자등록증 1부	사본	원본대조필(필수)
	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	사본	원본대조필(필수)
	⑤ 2022~2024년 재무제표	사본	원본대조필(필수)
	⑥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	사본	원본대조필(필수)
	⑦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사본	(필수)
	⑧ 탄소 저감 지원 자격요건 증빙자료	사본	해당 시 제출
	⑨ 기업인증 및 특허 수상 증빙서류	사본	해당 시 제출
	⑩ 수출 실적 증빙서류 (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, 수출신고필증 등)	사본	해당 시 제출
	⑪ 회사 소개서(카탈로그)	사본	해당 시 제출
	⑫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사본	해당 시 제출
	⑬ 공장등록증	사본	해당 시 제출

※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④ 문의처

지원분야	문의처	연락처	E-mail
Ⓐ탄소 인벤토리 구축 Ⓑ노후·저효율 장비 개선	포항테크노파크 신상섭 사원	054-223-2258	tkdtjq103@ptp.or.kr

Ⅳ 선정절차 및 기준

① 선정평가

○ 지원의 적정성, 탄소 저감 기대효과 및 노력도 등

- 정량지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평가
-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출된 지원서 발표평가

※ Ⓐ탄소 인벤토리 구축의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

단계	내용	일자(예정)	평가자
1단계	정량지표 평가	6월 중	수행기관
2단계	발표평가	6월 중	외부전문가 5인

※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

※ 발표평가 시 과제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○ 선정평가위원 구성: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

② 선정기준

○ 점수산정

- 정량지표 기준에 따른 배점
- 평가의견서 평가 배점 산술평균

○ 종합점수(정량+발표)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에 한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
③ 평가지표

구분	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정량평가	정량지표	- 기업 자부담 비율	5
		- 기업 경영 상태(기업신용평가등급)	5
발표평가	지원 필요성	- 지원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 방향	20
		-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	20
	추진계획 및 기대효과	- 기업의 탄소 저감 노력	20
		- 탄소 저감 기대효과	30
합 계			**100**

④ 최종선정

○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 한도를 최종 확정

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

⑤ 추진일정

※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, 지원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

* 결가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 불인정액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Ⅴ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① 신청제한

○ 사업내용이 지원목적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○ 신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

○ 기업이 부도, 휴.폐업 상태인 경우

○ 국세.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

○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

○ 개인회생.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

○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,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

※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

○ 외감 기업의 경우,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
<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>

▸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,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예,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)를 제출해야 함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○ 신청 장비 및 공정이 타 유사사업으로부터 에너지 진단, 절감 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
② 지원제외

○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

○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

○ **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'기업'의 경우,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**

○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
- 「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」, 「(재)포항테크노파크 규정」, 「(재)경북테크노파크 규정」

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
Ⅵ 선정기업의 의무

○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※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

○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○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,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○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Ⅶ 유의사항

① 신청 시 유의사항

○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※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② 평가 중 유의사항

○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○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선정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○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 (확인 필수)

③ 선정 후 유의사항

○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'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'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선정기업에게 있음

○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지원사업 참여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○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